

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3-5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5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르신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매입을 추진함에 따라 부동산 매매의 특성상 거래 대상 부동산의 신속한 확보 필요
- 나. 신수동 경로당 매입비 1,795,000천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,795,000천원을 감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3. 관련근거

- 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(기금의 관리·운용)

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1. 기금개요

가.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나. 설치년도 : 2019년

다. 재원조성

- 1) 매각·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
- 2) 대부료·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
- 3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

라. 기금용도

- 1)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
- 2) 일반재산의 관리·처분·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
- 3)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·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등

2. 지출계획 변경안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	지출액	경정액	증감	비고
합 계			32,159,337	32,159,337	-	
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확충(공유재산관리기금)			1,712,100	3,507,100	1,795,000	
행정재산취득	일반운영비	201-01 사무관리비	2,100	2,100	-	심의위원회 참석수당
	시설비 및 부대비	401-01 시설비	1,710,000	1,710,000	-	토지 매입비
	자산취득비	405-01 자산 및 물품취득비	-	1,795,000	1,795,000	경로당 매입비
재무활동 보존지출(공유재산관리기금)			30,447,237	28,652,237	△1,795,000	
보존지출	예치금	602-01 예치금	30,447,237	28,652,237	△1,795,000	예치금